2020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납부면제금액 설정에 관한 연구

- 2020. 11.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2020년도 연구용역 보고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납부면제금액 설정에 관한 연구

2020. 11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 · 납부면제금액 설정에 관한 연구

2020. 11

송헌재, 전병힐

<제목 차례>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가. 납부면제 금액을 포함한 기존의 간이과세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 검토 ····· 1
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필요성에 대한 검토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2
II. 제도 현황 ····· 3
1. 부가가치세 ····· 3
가. 개요 ····· 3
나. 영세율 및 면세 ····· 4
다. 간이과세 ····· 5
(1) 자격요건 ····· 5
(2) 간이과세자 결정 및 신고 ····· 6
(3) 적용시기 ····· 6
(4) 간이과세의 포기 ····· 7
2. 세수 현황 ····· 8
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III. 부가가치세 면세 및 간이과세 기준점 관련 문헌 ····· 15
1. 해외 선행연구 ····· 15
2. 국내 선행연구 ····· 16
IV. 분석모형 ····· 20
1. 이론 모형 ····· 20
가. Keen and Mintz (2004) 모형 ····· 20
나. 송헌재·전병힐 (2020) 확장 모형 ····· 21
2.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모형 ····· 23
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반영 목적 ····· 24
나. 실증분석 모형 ····· 24
다. 주요 모수의 설정 방법 ····· 26
(1) 공적자금의 한계비용 ····· 26
(2) 납세협력비용 ····· 26

(3) 부가가치세 징세행정비용 ····· 31
(4) 간이과세자 선택확률 ····· 32
V.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적정 기준금액 추계 방안 ····· 34
1. 분석자료 ····· 34
2. 기초통계분석 ····· 35
3. 자료 분석 방법 ····· 41
VI. 결론 ····· 45
참 고 문 헌 ····· 48
부록 ····· 49

<표 차례>

<표 1> 부가가치세 개요 ····· 3
<표 2> 부가가치세액 계산 ····· 4
<표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 ····· 7
<표 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8
<표 5>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 9
<표 6> 연도별 간이사업자 중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 ····· 10
<표 7> 업태별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2019년 기준) ····· 11
<표 8> 업태별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 ····· 12
<표 9>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 14
<표 10> 개인사업자 업종·규모별 매출액, 납세협력비용, 기업 수 ····· 27
<표 11>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개인사업자 ····· 28
<표 12> 선형회귀분석 결과 ····· 29
<표 13> 업종별·유형별 납세협력비용 비중 ····· 30
<표 14> 사업자 유형별 사업자 1인당 징세행정비용 추계 ····· 32
<표 15> 부가가치세 납세자 기초통계 ····· 37
<표 16>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 38
<표 17>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편입된 비율 ····· 40
<표 18>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중 음의 부가가치율을 보이는 사업자의 비율 ····· 41
<표 19> 로짓 분석결과를 이용해 추정한 간이과세 확률 ····· 43

<부표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49
<부표 2> 농·림·어업 및 수렵업 기초통계 ····· 51
<부표 3> 숙박업 기초통계 ····· 51
<부표 4> 운수, 창고, 통신업 기초통계 ····· 52
<부표 5> 부동산 임대업 기초통계 ····· 52
<부표 6> 대리, 중계, 주선업 기초통계 ····· 53
<부표 7>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기초통계 ····· 53
<부표 8> 광업 기초통계 ····· 54
<부표 9> 제조업 기초통계 ····· 54
<부표 10> 전기, 가스, 수도 기초통계 ····· 55
<부표 11> 도매업 기초통계 ····· 55
<부표 12> 소매업 기초통계 ····· 56
<부표 13> 부동산 매매업 기초통계 ····· 56
<부표 14> 건설업 기초통계 ····· 57
<부표 15> 음식업 기초통계 ····· 57
<부표 16> 기타 업종 기초통계 ····· 58
<부표 17> 업종별 간이과세확률 추정 결과 ····· 59

I. 서론

1. 연구목적

가. 납부면제 금액을 포함한 기존의 간이과세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 검토

- ❑ 우리나라 소규모사업자들을 위한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4,800만원, 납부면제금액은 3,000만원으로 운용 중
- ❑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 기준금액에 대한 현실적 분석 필요
- ❑ 특히,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고정되어 있어 경제규모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 대두

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필요성에 대한 검토

- ❑ 20년 이상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2000년에 정해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원법안 등이 다수 발의되고 있음

- ❑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접근은 거의 없는 실정임

- ❑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국가 경제 규모 및 산업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간이과세제도 및 납부면제금액에 관한 국내외 문헌 검토

○ 국내의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에 대한 논의 검토

○ 해외의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납세편의제도 검토

○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간이과세 제도 및 기준금액 변화의 필요성을 검토

❑ 적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 산출 방법 제시

○ 선행연구의 연구방법론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간이과세 제도에 적합한 '적정' 기준금액 및 납부면제금액 산출 모형 제시

○ 수치적 분석에 필요한 모수 및 변수에 대한 추정법 제안

○ 모형에 대한 수치적 분석 수행 시 적절한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

II. 제도 현황

1. 부가가치세

가. 개요

❑ 부가가치세는 1976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고 1977년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하고 있음

<표 5> 부가가치세 개요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① 사업자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세대상	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1기(1월 1일 ~ 6월 30일), 2기(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과세표준	①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②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10%

자료: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계산에 따라 최종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이 결정됨

<표 6> 부가가치세액 계산

최종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A) − 매입세액(B)) - 경감·공제세액(C) + 가산세(D)

- 매출세액(A) = 과세표준 × 10%
- 매입세액(B):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1)]
- 경감·공제세액(C):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제47조 및 다른 법률 따른 세액공제[2)]
- 가산세(D):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가산세

주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등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이 계산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04조의29, 제106조의7, 제126조의3 등에 기타 공제항목 규정

자료: 국세청(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5.asp?cinfo_key=MINF88201007261518 13&menu_a=50&menu_b=100&menu_c=3000, 2020.8.31. 검색)

나. 영세율 및 면세

❑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교공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같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항목

❑ 다만 이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부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 간이과세

(1) 자격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음

○ 광업, 제조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제외),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등의 경우 간이과세 범위에서 제외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간이과세 범위에서 제외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됨

○ 납부의무 면제자는 간이과세자 중 한 과세기간에 매출 과세표준이 2012년까지는 1,200만 원 미만, 2017년까지는 2,400만 원 미만, 2018년부터(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는 3,000만 원 미만인 자를 말함

❑ 2020년 12월 2일 공개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임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

-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

○ 추가로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

(2) 간이과세자 결정 및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결정

- ○ 이때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한 기간의 끝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
-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시작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함

(3) 적용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1년(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임

-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됨

❑ 기존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하 '기준사업장')의 1년(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기준사업장과 일반과세로 전환되었던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

○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되었던 사업장의 1년간(1.1.~12.31.)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4) 간이과세의 포기

❑ 기존의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1),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2)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1)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2)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계산에 따라 최종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이 결정됨

<표 7>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

최종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A) - 공제세액(B) + 가산세액(C)
- 매출세액(A) =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B)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타 공제액[주)] - 가산세(C):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가산세

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64조, 제65조 등에 따라 기타 공제액이 계산됨

자료: 국세청(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5.asp?cinfo_key=MINF88201007261518 13&menu_a=50&menu_b=100&menu_c=3000, 2020.8.31. 검색)

<표 8>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2. 세수 현황

❑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신고인원 중 법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고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임

- ○ 2019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인원은 1,603,298명으로 이는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6,753,201명)의 23.7%임
- ○ 간이과세자 비중은 2015년 28.4%에서 2019년 23.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한편 과세표준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 과세표준 중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로 신고인원의 비중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임

<표 9>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단위: 명, 십억 원, %)

구분	신고인원				과세표준				납부세액			
	합계	법인	개인		합계	법인	개인		합계	법인	개인	
			일반	간이			일반	간이			일반	간이
2015	5,837,775	705,581	3,472,032	1,660,162	3,112,402	2,471,814	609,687	30,900	30,655	11,533	18,571	551
	(100.0)	(12.1)	(59.5)	(28.4)	(100.0)	(79.4)	(19.6)	(1.0)	(100.0)	(37.6)	(60.6)	(1.8)
2016	6,085,025	754,335	3,678,331	1,652,359	3,216,298	2,552,102	632,793	31,402	37,166	17,233	19,379	554
	(100.0)	(12.4)	(60.4)	(27.2)	(100.0)	(79.3)	(19.7)	(1.0)	(100.0)	(46.4)	(52.1)	(1.5)
2017	6,347,311	800,138	3,900,526	1,646,647	3,472,997	2,772,620	668,220	32,157	35,078	13,925	20,581	572
	(100.0)	(12.6)	(61.5)	(25.9)	(100.0)	(79.8)	(19.2)	(0.9)	(100.0)	(39.7)	(58.7)	(1.6)
2018	6,478,314	846,823	4,068,351	1,563,140	3,628,108	2,908,469	688,290	31,349	34,018	11,838	21,619	562
	(100.0)	(13.1)	(62.8)	(24.1)	(100.0)	(80.2)	(19.0)	(0.9)	(100.0)	(34.8)	(63.6)	(1.7)
2019	6,753,201	900,617	4,249,286	1,603,298	3,696,926	2,967,620	696,948	32,358	37,775	14,338	22,856	582
	(100.0)	(13.3)	(62.9)	(23.7)	(100.0)	(80.3)	(18.9)	(0.9)	(100.0)	(38.0)	(60.5)	(1.5)

주: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값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 면제자 수는 2019년 기준 1,265,662명으로 전체 간이과세자 중에서 7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표 10> 연도별 간이사업자 중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5,837,775	6,085,025	6,347,311	6,478,314	6,753,201
- 간이사업자(A)	1,660,162	1,652,359	1,646,647	1,563,140	1,603,298
- 납부의무 면제자(B)	1,164,141	1,208,448	1,198,006	1,238,962	1,265,662
납부의무면제자 비중(B/A)	70.1%	73.1%	72.8%	79.3%	78.9%

주: 표에서 납부의무 면제자는 2017년까지는 2,400만 원 미만, 2018년부터(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는 3,000만 원 미만인 자를 말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1> 업태별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2019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신고인원	과세분매출			영세율매출		면세분매출		가산세액	공제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인원	과세표준	세액	인원	과세표준	인원	수입금액			
소계	1,603,298	1,602,698	32,358,265	581,649	600	18,730	23,689	1,363,289	342	305,698	276,293
농·임·어업	919	917	10,518	212	2	85	259	13,690	1	56	157
제조업	23,312	23,304	366,559	7,302	8	164	1,881	138,485	4	3,999	3,307
전기·가스·수도업	179	175	654	4	4	12	6	21	-	-	4
도매업	1,068	1,056	9,007	104	12	272	251	40,641	-	75	29
소매업	331,744	331,475	5,829,390	58,638	269	8,865	10,313	847,083	28	51,211	7,455
부동산매매업	48	48	389	12	-	-	2	1,570	-	3	9
건설업	2,464	2,463	20,435	610	1	164	37	3,422	2	172	440
음식업	280,426	280,422	11,267,071	112,797	4	68	1,631	62,976	7	110,177	2,627
숙박업	24,670	24,667	397,083	7,998	3	83	103	1,585	6	4,953	3,051
운수·창고·통신업	193,260	193,255	3,922,998	78,541	5	123	171	3,948	10	43,304	35,247
부동산임대업	401,441	401,437	4,844,351	145,504	4	62	6,610	137,480	122	1,073	144,553
대리·중개·도급업	87,010	86,947	1,410,801	42,220	63	2,283	492	32,247	55	21,726	20,549
서비스업	256,757	256,532	4,279,009	127,707	225	6,549	1,933	80,141	107	68,949	58,86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0.

<표 12> 업태별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164,141	70.1%	1,208,448	73.1%	1,198,006	72.8%	1,238,962	79.3%	1,265,662	78.9%
농·임·어업	352	72.7%	488	80.7%	558	78.8%	623	86.4%	814	88.6%
광업	-	-	-	-	-	-	-	-	-	-
제조업	19,809	80.6%	20,890	85.4%	20,587	85.0%	20,054	87.9%	20,270	87.0%
전기·가스·수도업	87	93.5%	101	96.2%	134	98.5%	123	96.9%	176	98.3%
도매업	-	-	-	-	-	-	-	-	-	-
소매업	210,641	65.1%	226,707	70.0%	234,043	71.5%	248,285	79.7%	269,644	81.3%
부동산매매업	30	75.0%	41	85.4%	44	83.0%	45	91.8%	45	93.8%
건설업	1,705	85.1%	1,861	92.8%	2,057	92.7%	2,088	95.0%	2,329	94.5%
음식업	140,713	43.4%	144,749	44.8%	134,799	43.7%	146,861	51.5%	143,937	51.3%
숙박업	16,677	73.1%	18,256	77.0%	18,839	76.5%	19,774	83.9%	20,804	84.3%
운수·창고·통신업	183,442	87.8%	171,939	85.0%	159,598	80.2%	164,691	84.6%	147,113	76.1%
부동산임대업	371,919	85.2%	382,297	89.8%	377,661	89.4%	371,336	93.5%	376,111	93.7%
대리·중개·도급업	52,204	62.9%	58,784	68.9%	60,043	69.0%	66,889	78.6%	71,123	81.7%
서비스업	166,562	71.7%	182,335	76.2%	189,643	76.1%	198,193	82.9%	213,296	83.1%

주: 음영 표시된 부분은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이 90% 이상인 업태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20년 7월 23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 공고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한 관련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전자적 용역 공급 장소 명확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개인사업자의 경영여건 감안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개선을 개정이유로 제시함

❑ 그 중 간이과세제도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음

-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표 13>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간이과세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개정(안)	주요내용
1. 영수증 발급대상 조정	- 간이과세자는 현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제도 변경 - 관련 규정의 적용 기간 신설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관련 제도 개선	- 간이과세자(음식점업·숙박업)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그 외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 일정한 요건의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적용
3.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8,0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 × 0.5%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의제 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6. 간이과세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7.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신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현재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준용
8.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인하	- 결정·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인하
9.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기준 금액 상향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 4,800만 원 미만

자료: 「부가가치세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130호, 2020.7.23.)

III. 부가가치세 면세 및 간이과세 기준점 관련 문헌

1. 해외 선행연구

❑ Keen and Mintz (2004)는 부가가치세수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순 세수를 극대화하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여 부가가치세 최적 면세점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고, 부가가치세율을 비롯한 주요 모수들이 최적 면세점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

- ○ 면세점 변화에 따른 개별 사업자들 매출 및 생산 수준 조정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2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함
- ○ 먼저 각 사업자의 매출액이 면세점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해 순 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최적 면세점을 도출한 결과, 부가치세율과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 징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높을수록, 정부 세수에 대한 가중치가 낮을수록 최적 면세점 수준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함
- ○ 개별 사업자의 고정된 매출을 가정하는 단순 모형은 경제 내 모수 값으로부터 쉽게 최적 면세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면세점 조정에 따른 개별 사업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 단순 모형이 갖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면세점 및 부가가치세율 구조에 따라 사업자들이 반응하여 매출액을 조정함에 따라, 경제 전체 내의 매출액 분포가 부가가치세 체계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확장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함
- ○ 확장 모형의 경우 최적 면세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를 구하기 곤란하여, 캐나다 경제를 반영하도록 주요 모수 값들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최적 면세점이 대략 87.4~279.6 CAD 값을 갖는다고 도출했으며, 또한 단순 모형에서 확인한 최적 면세점과 모수 간의 관계를 확인함

❑ Zee (2005)는 Dixit-Stigliz 모형을 이용하여 최적 면세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를 도출하여 최적 면세점이 경제 내의 주요 모수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봄

- ○ Dixit-Stigliz 모형에 부가가치세를 결합하여 사업자들의 이윤 극대화 행태로부터 얻어진 경제 내 균형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행정비용을 반영

한 경제 전체의 간접효용함수를 구축함

- ○ 간접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 면세점 조건식으로부터 최적 면세점을 주요 모수 (납세협력비용, 징세행정비용,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율, 소비 대체탄력성, 정부 세수 중 부가가치세수 비중,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의 함수식을 구제적으로 도출함
- ○ 최적 면세점에 대한 해를 살펴보면,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이 증가할수록, 최적 면세점은 증가하나, 부가가치세율과 부가가치율의 증가가 최적 면세점에 미치는 효과는 한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음

❑ Brashares et al. (2014)는 미국의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세 납세 행정자료에 Keen and Mintz (2004)의 단순 모형을 적용하여 미국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는 가정 아래 최적 면세점 수준을 도출해 냄

- ○ 2007년 귀속분 미국 소득세 자료로부터 부가가치과세 대상 매출, 매입, 수출액 등 부가가치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함
- ○ 부가가치세 도입 시에 예상되는 가상적인 납세협력비용은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면제가 없는 스웨덴의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고, 징세행정비용은 IRS 전체 예산 대비 미국 연방세 납세협력비용의 대략적인 비율이 10%라는 사실을 적용해 추정된 개별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의 10%로 간주함
- ○ 주어진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점 아래서 개별 사업자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즉 납세협력비용과 징세행정비용에 대한 분포를 도출하여, Keen and Mintz (2004)의 단순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 부가가치세수입을 극대화하는 부가가치세 최적 면제점을 실증적으로 살펴봄
- ○ 추정된 최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점은 약 $200,000이며, 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자 중 90% 분위에 해당함

2. 국내 선행연구

❑ 김승래·박명호·홍범교 (2007)는 Keen and Mintz (2004)와 Zee (2005)의 결과를 이용해 최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점을 시산함

- ○ Keen and Mintz (2004)의 단순 모형에서 얻어진 최적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점 공식에 관련된 모수를 넣어 시산할 결과 최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점이 모수 값에 따라 2,300～49,300

만원까지 넓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함

○ Zee (2005)의 최적 부가가치 면세점 공식에 국내 관련 모수를 넣어 시산한 결과에서도 최적 부가가치세 납무면제점이 220,400~4,000만원의 범위에 걸쳐 모수 값의 선택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함

○ 김승래·박명호·홍범교 (2007)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점 2,400만원이 두 모형의 시산 결과로부터 얻어진 최적 기준점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국내 납부면제 기준점이 최적 수준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함

❑ 정유석 (2018)은 주요국 간이과세제도와의 비교 및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전체 신고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신고인원의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징수세액 비중은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며, 세무행정상 효율성 제고 및 납부 절차상 부담 완화를 위한 간이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함

- 납부의무 면제자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근거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에 충족되는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납부의무 면제를 위해 공급가액을 축소 조정하고자 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점진적 폐지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간이과세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과 면제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하진·권기정 (2016)은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 간이과세제도는 첫째, 부가가치세의 근본기능인 세금계산서제도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 둘째, 동일한 세율 적용으로 보장되는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점, 셋째, 탈세 및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점, 넷째, 간이과세자 자격 유지를 위한 매출액 은폐 및 매출 누락으로 인해 조세의 불공평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함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납세의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납부의무 면제 제도 배제,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제시함

❑ 서정우 (2015)는 간이과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 높은 간이과세자 비율, 근거과세 저해 및 탈세 가능성,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불합리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 사업자들이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할 수 없는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축소를 위한 정책 방향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봄

○ 또한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간이과제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함

– –단기적으로는 현재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질적인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과 함께 업종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심충진·김진태 (2020)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다음 여섯 가지의 연구 결과를 보고함

○ 첫째,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 둘째,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비교했을 때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은 농·임·어업이 유일하며, 낮게 나타난 업종 중 차이가 50% 이상인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 도매업(소매업 겸업), 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임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낮게 나타난 농 · 림 · 어업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최소한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율보다는 낮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셋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효과는 전체적으로 4,926억 원이며, 간이과세자 1인당 299,200원인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간이과세자가 지원받는 조세혜택의 규모 차이가 큰 것에 따르는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 넷째, 현재의 조세혜택 규모를 유지하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개선하는 경우(업종 간 균등비례법) 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이 받는 조세혜택은 줄어들며, 제조업, 대리·중개·도급업의 경우 그 혜택의 정도가 증가함

○ 다섯째, 현재의 조세혜택 규모를 유지하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개선하는 경우(업종 간 과세표준 비례법) 제조업, 소매업, 건설업, 대리·중개·도급업에 대한 조세혜택은 증가하고, 음식업에 대한 조세혜택은 감소함

○ 여섯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후 수평적 공평성의 개선 정도는 업종 간 균등비례법의 경우 조세혜택의 변동계수가 1.383, 업종 간 과세표준 비례법의 경우 1.323으로 나타나 과세

표준 비례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업종 간 조세혜택의 공평성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봄

IV. 분석모형

1. 이론 모형

가. Keen and Mintz (2004) 모형

❑ Keen and Mintz (2004)는 최적 납부면제점을 찾기 위해 납부면제점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 증가의 순편익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한 사회후생을 아래와 같은 목적함수를 통해 고려함

$$W(z)=\delta\left\{\tau\int_{z}^{\infty}\nu(Y)\,Y\,dH(Y)-A[1-H(z)]\right\}-\left\{\tau\int_{z}^{\infty}\nu(Y)\,Y dH(Y)+\Gamma[1-H(z)]\right\}$$

○ 여기서

- Y : (세전) 매출액
- $H(Y)$: (경제 내 세전) 매출액의 누적 분포함수
- $\nu(Y)$: (세전) 매출액 Y에 대한 부가가치율 함수
- z : 납부면제점
- τ : 부가가치세율
- A : (부가가치세 징수) 징세행정비용
- Γ :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
- δ : (세수 단위 당) 사회적 가치 ($\delta>1$)

○ 이 모형에서 납부면제점을 z로 설정하면 매출이 납부면제점 이하인 사업자에게서는 아무런 세수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매출이 납부면제점을 넘는 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수가 발생하는 동시에 징세행정비용 A과 납세협력비용 Γ 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됨

- Keen and Mintz (2004)의 모형에서는 납부면제점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 징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가 가져오는 편익 구조를 살펴보면, 공적 자금에 대한 사회적 가치 δ 가 1보다 크다는 가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징수가 부가가치세 징수액에 해당하는 민간부문 이익 감소를 상쇄한 후에도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1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1원만큼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나 정부부문 (지출)의 편익이 δ 원만큼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delta-1$원에 해당하는 편익 증가가 있다고 가정함

❑ Keen and Mintz (2004)는 납부면제점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변화분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 다음과 같은 최적 납부면제점 도출

$$z^* = \frac{\delta A + \Gamma}{(\delta - 1)\tau\nu(z^*)}$$

❑ 도출된 최적 납부면제점에 대한 주요 모수들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사회적 비용의 요소, 즉 징세행정비용 A 과 납세협력 비용 Γ의 증가는 최적 납부면제점 z^*를 인상하고,

○ 세수의 증가, 즉 부가가치세율 τ 와 부가가치율 $v(z^*)$의 증가는 최적 납부면제점 z^*를 인하함

○ 공적자금의 사회적 가치 δ 의 영향은 납부면제점 변화에 대한 부가가치율 변화의 탄력성에 따라 최적 납부면제점 z^*의 증가, 감소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최적 납부면제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계조건 뿐만 아니라 2계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 Keen and Mintz (2004)의 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2계조건을 구하면 아래와 같음

$$\frac{\partial}{\partial z}\nu(z)z = \nu(z) + \nu'(z)z = \left(1 + \nu'(z)\frac{z}{\nu(z)}\right) > 0$$

– 면세점 변화에 대한 부가가치율 변화의 탄력성이 낮은 경우, 다시 말해 $\varepsilon_\nu = \frac{d\nu(z)}{dz}\frac{z}{\nu(z)} > -1$ 이면, δ 증가가 최적 납부면제점 z^*를 인상하고, $\varepsilon_\nu < -1$인 경우 최적 납부면제점을 낮춤

❑ Keen and Mintz (2004)는 모형에 이용된 주요 모수들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최적 납부면제점 z^*를 시산하였음

나. 송헌재 · 전병힐 (2020) 확장 모형

❑ 송헌재·전병힐 (2020)에서는 앞서 설명한 Keen and Mintz (2004)의 부가가치세 모델을 바탕으로 납부면제점과 간이과세점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수정함

❑ 우선, 사업자들은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상이

○ z_H을 초과하는 (세전) 매출액을 갖는 사업자들은 일반과세 대상으로 τ_H의 세율을 적용받으

며,

- ○ z_H미만의 (세전) 매출액을 갖는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대상으로 τ_L의 세율을 적용받음
- ○ 간이과세 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τ_L은 τ_H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

$$\tau_L = \tau_H \times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 사업자 중 (세전) 매출액이 z_L 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납부면제자로 간주

- ○ 따라서, 납부면제점 z_L 과 간이과세 기준점 z_H 사이에는 $z_L \leq z_H$ 의 관계가 성립함

❑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여부에 따라 징세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이 상이할 것임

- ○ Keen and Mintz (2004)와 같이 납부면제 사업자들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아무런 징세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이 없다고 가정함
- ○ 간이과세 사업자들의 징세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은 각각 A_L 와 Γ_L로 표기함
- ○ 마찬가지로 일반과세 사업자들에 대한 징세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은 각각 A_H 와 Γ_H로 표기함
- ○ 두 사업자 유형에 대한 비용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가정함

$$A_L < A_H \quad , \quad \Gamma_L < \Gamma_H$$

❑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율 및 관련된 비용이 상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송헌재·전병힐 (2020)은 다음과 같은 후생함수를 도출해냄

$$\begin{aligned} W(z_L, z_H) = (\delta - 1)&\left\{\tau_L \int_{z_L}^{z_H} Y\, dH(Y) + \tau_H \int_{z_H}^{\infty} \nu(Y)\, Y\, dH(Y)\right\} \\ &- \delta\{A_L(H(z_H) - H(z_L)) + A_H(1 - H(z_H))\} \\ &- \{\Gamma_L(H(z_H) - H(z_L)) + \Gamma_H(1 - H(z_H))\} \end{aligned}$$

- ○ Keen and Mintz (2004)의 후생함수와 같이 부가가치세수 1원을 징수할 때 $\delta - 1$의 편익이 증가하는 동시에 각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음

❑ 송헌재·전병힐 (2020)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납부면제점 및 간이과세기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z_L^* = \frac{\delta A_L + \Gamma_L}{(\delta - 1)\tau_L}$$

$$z_H^* = \frac{\delta(A_H - A_L) + (\Gamma_H - \Gamma_L)}{(\delta - 1)(\tau_H \nu(z_H^*) - \tau_L)}$$

○ 여기서 도출된 최적 납부면제점은 간이과세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Keen and Mintz (2004)의 최적 납부면제점의 결과와 일치함

○ 납부면제구간에 속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율과 관련된 비용들이 전부 0임을 고려하면, 최적 납부면제점 결과는 최적 간이과세점 결과의 특별한 형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

○ 이 추론을 일반화하면 부가가치세율이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구조 아래서 세율 구간에 대한 최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매출액이 $[z_{j-1}, z_j)$, $j = 1,2,\cdots,J$ (단, $z_0 = 0$, $z_J = \infty$) 구간에서 속할 때 부가가치세율이 τ_j 라면, 부가가치세율 구간에 대한 최적 경계점은 아래와 같음

$$z_j^* = \frac{\delta(A_{j+1} - A_j) + (\Gamma_{j+1} - \Gamma_j)}{(\delta - 1)(\tau_{j+1} - \tau_j)\nu(z_j^*)}$$

❑ 최적 납부면제점과 최적 간이과세 기준점에 대한 주요 모수들의 영향도 단순 모형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확인됨

○ 만일 $\nu(z_j^*)$가 증가함수라면 아래의 논의가 성립함

○ 각 기준점에서 부가가치세수 증가폭이 클수록 최적 기준점이 하락하고,

- 부가가치세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τ_{j+1}이 τ_j보다 월등히 크거나 τ_j가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함
- 혹은 부가가치율 ($\nu(z_j^*)$)이 간이과세 기준점을 넘어설 때 급격하게 커진다는 것을 뜻함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은 분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최적 기준점은 하락함

○ ○각 기준점에서 비용 증가가 클수록 최적 기준점이 높아지고,

- 비용 증가가 크다는 것은 A_{j+1}이 A_j보다 월등히 크거나 A_j의 값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므로 비용 증가가 커지는 것은 분자가 커지는 것이므로 최적 기준점이 높아짐

○ 만일 $\nu(z_j^*)$가 증가함수가 아니라면 파라미터가 달라질 때 z_j^*의 변화와 부가가치율의 변화의 방향이 달라 최적 경계점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움

○ 부가가치율 탄력성이 -1보다 크면 δ 증가가 최적 기준점을 증가시키나, -1보다 작으면 오히

려 최적 기준점을 감소시키게 됨

2.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모형

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반영 목적

❑ Keen and Mintz (2004) 및 송헌재·전병힐 (2020)의 분석에서는 경제 내에 존재하는 사업자들의 매출액 분포에 대해 특별한 가정 없이 최적 납부면제 기준점 및 최적 간이과세 기준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최적 기준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율에 대한 강한 제약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 ○ 또한, (현실의) 매출액 분포에 따라 최적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음

❑ 상기한 한계점은 이론적 모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Brahares et al. (2014)를 따라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 및 부가가치율 분포에 대한 정보를 사회후생함수에 반영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 구체적으로 송헌재·전병힐 (2020)의 사회후생함수를 이론적인 매출액 분포로 이용하여 평가하는 대신 실제 매출액 신고자료로부터 구축된 경험적 누적분포 함수 (empiric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 더불어 부가가치세 신고 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사업체가 보고한 추가적인 정보들, 예를 들어 업종, 매출, 매입 및 부가가치율 정보를 목적함수에 반영
- ○ 기존 모형에서는 동일한 매출액을 가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가가치율을 갖도록 가정되어 있으나, 개별 사업자 정보를 이용해 실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자 간 이질성이 반영될 수 있음

나. 실증분석 모형

❑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발상은 사회후생함수를 구성하는 매출액 분포 및 부가가치율 함수 등에 국세청 미시자료로부터 확인되는 정보들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단순히 매출액 분포함수만을 실증누적분포함수로 대체하는 것 외에 개별 사업자들의 이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간이과세 및 비용 구조 역시 수정하고자 함

❑ 실증자료에 기초한 사회후생함수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정

$$\Pi(z_L, z_H) = \sum_{i=1}^{N} \pi_i(z_L, z_H)$$

○ 여기서 i는 사업자들을 나타내는 첨자로, 사회 전체에 N개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함

○ π_i 는 사업자 i로부터 발생하는 순 사회후생으로, 사업자 i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구성됨

$$\pi_i(z_L, z_H) = \sum_{s=0,1,2} p_i(s \mid z_L, z_H)\, \pi_i(s)$$

- s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적용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0의 값은 면제, 1의 값은 간이과세, 2는 일반과세임을 나타냄
- 따라서, $s=0$이면 $\tau=0$, $s=1$이면 τ_L, $s=2$이면 τ_H 가 적용됨
- $p_i(s|z_L, z_H)$는 주어진 납부면제점 및 간이과세 기준점 하에서 사업자 i가 각 사업자 유형일 확률
- 사업자 i가 유형 s에 속할 때 발생하는 사회후생에 대한 순 기여분인 $\pi_i(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s=0 \ : \ \pi_i(s) = 0$$
$$s=1 \ : \ \pi_i(s) = (\delta-1)\tau_{L,i}\nu_i y_i - \delta A_{L,i} - \Gamma_{L,i}$$
$$s=2 \ : \ \pi_i(s) = (\delta-1)\tau_H \nu_i y_i - \delta A_{H,i} - \Gamma_{H,i}$$

- ν_i는 사업자 i의 부가가치율을 나타냄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됨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의 세율 $\tau_{L,i}$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별로 상이함
-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의 한도가 매출세액으로 설정되므로 실제 간이과세자 기여분을 계산할 때는 $\pi_i(s) = (\delta-1)\max(\tau_{L,i}\nu_i y_i, 0) - \delta A_{L,i} - \Gamma_{L,i}$의 식을 이용함

❑ 종합할 때 최종적인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음

$$\Pi(z_L, z_H) = \sum_{i=1}^{N} p_i(1|z_L, z_H)\{(\delta-1)\tau_{L,i}\nu_i y_i - \delta A_{L,i} - \Gamma_{L,i}\} + p_i(2|z_L, z_H)\{(\delta-1)\tau_H \nu_i y_i - \delta A_{H,i} - \Gamma_{H,i}\}$$

❑ 국세청 자료를 결합하여 평가된 사회후생함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최적 납부면제 기준점과 간이과세 기준점을 찾고자 함

다. 주요 모수의 설정 방법

(1) 공적자금의 한계비용

❑ Keen and Mintz (2004)와 Brashares et al. (2014)는 $\delta = 1.3$의 값을 이용함

❑ 김승래 외 (2007)은 $\delta = 1.115$를 주된 값으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1.1과 1.2를 이용함

❑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1.115와 1.3 등의 값을 이용할 수 있음

(2) 납세협력비용

❑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 정보로부터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체별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할 수 있음

- ○ <표 10>은 홍범교 외 (2013)에서 제시한 개인사업자 업종·규모별 매출액, 납세협력비용, 기업 수를 요약한 것임
- ○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체별 평균 납세협력비용 산출 가능

<표 14> 개인사업자 업종 · 규모별 매출액, 납세협력비용, 기업 수

구분		상시 종업원 수					전체
		0명	1~9명	1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농·임·어·광업	매출액	2.0	11.6	37.3	-	-	2.6
	납세협력비용	40.3	237.3	744.2	-	-	54.0
	기업 수	28.4	1.6	0.1	-	-	30.1
제조업	매출액	1.6	7.8	27.6	62.7	-	4.6
	납세협력비용	80.3	333.0	1,082.0	1,185.0	-	200.8
	기업 수	188.0	109.3	9.1	0.2	-	306.6
건설업	매출액	1.6	3.4	12.9	-	-	1.7
	납세협력비용	92.6	288.2	586.0	-	-	113.9
	기업 수	216.3	24.7	0.7	-	-	241.6
도·소매업	매출액	2.0	11.3	43.5	-	-	3.2
	납세협력비용	64.6	346.4	1,303.4	-	-	100.2
	기업 수	845.7	118.0	0.9	-	-	964.6
음식·숙박업	매출액	0.8	4.2	13.5	-	-	1.1
	납세협력비용	102.5	444.4	1,004.2	-	-	125.9
	기업 수	504.0	34.0	1.1	-	-	539.0
부동산업	매출액	0.2	1.8	3.3	-	-	0.3
	납세협력비용	42.1	292.5	627.1	-	-	50.9
	기업 수	656.8	23.1	0.3	-	-	680.1
금융·보험업	매출액	0.8	23.8	-	-	-	1.1
	납세협력비용	50.5	366.8	-	-	-	54.8
	기업 수	26.8	0.4	-	-	-	27.1
운수·창고·통신업	매출액	0.6	3.9	10.0	-	-	0.7
	납세협력비용	49.1	281.2	6,855.9	-	-	60.5
	기업 수	287.5	4.9	0.3	-	-	292.8
서비스업	매출액	0.5	2.6	9.7	48.2	43.0	0.8
	납세협력비용	54.1	242.1	595.6	897.6	488.0	80.2
	기업 수	468.3	62.6	3.8	0.1	0.2	535.0
기타	매출액	0.3	3.6	13.0	54.5	76.1	0.6
	납세협력비용	54.1	242.1	595.6	897.6	488.0	80.2
	기업 수	884.3	58.7	7.7	0.5	0.1	951.3
전체	매출액	0.9	6.6	19.1	55.6	56.2	1.5
	납세협력비용	59.1	323.4	501.3	1,027.5	1,182.2	57.0
	기업 수	4,105.9	437.3	24.0	0.9	0.3	4,568.3

주: 1) 매출액 및 납세협력비용은 업종별·규모별 평균 매출액 (단위: 억 원) 및 평균 납세협력비용 (단위: 만 원)을 의미함

2) 기업 수는 업종별·규모별 기업 수로 단위는 1,000개임. 공란은 해당 사업자가 없음을 의미함

자료: 홍범교 외 (2013)의 <표 III-11> - <표 III-13> (p.39~42)를 재구성

❑ 매출액에 대한 세부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출액 구간별 평균값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에 대해 선형함수의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함

○ 이는 매출액 대비 평균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는 홍범교 외 (2013)의 관측과 전체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이 증감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하는 간단한 모형을 선택하고자 함임

○ 위의 표에서 제시된 납세협력비용은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및 원천세를 포함한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비용을 모두 사용하면 실제 부가가치세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을 과대추정하게 됨

○ 이를 감안하여 홍범교 외 (2013)의 조사결과를 이용해 전체 비용 중 31.0%가 부가가치세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으로 가정할 수 있음

<표 15>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개인사업자

(단위: 억 원, %)

세목	납세협력비용	
	금액	점유비
공통항목[1)]	1,185.3	2.9
소득세	23,920.0	58.1
부가가치세	12,749.4	31.0
원천세	2,924.7	7.1
기타세목[2)]	357.1	0.9
합계	41,136.5	100.0

주 1) 공통항목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훈령 등에 근거한 사업자 등록, 세무조사, 불복청구,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등과 같이 특정 세목과 직접 연관시키기 어려운 정보제공의무들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납세협력비용 포함

2) 기타 세목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제조세, 조특법, 인지세, 주세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는데 따르는 납세협력비용 포함

자료: 홍범교 외 (2013) <표 III-2> (p.31) 인용

❑ 각 매출액 구간별 기업 수를 가중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음

○ 납세협력비용에 로그를 취해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매출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정한 값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진행

<표 16> 선형회귀분석 결과

구 분	상수항 ($\hat{\alpha}$)	매출액 ($\hat{\beta}$)
농·임·어·광업	3.99173	0.00075
제조업	5.13968	0.00037
건설업	4.72232	0.00134
도·소매업	4.51207	0.00064
음식·숙박업	4.89149	0.00160
부동산업	3.74056	0.00875
금융·보험업	3.85301	0.00086
운수·창고·통신업	3.58349	0.00525
서비스업	5.06330	0.00034
기타	5.16601	0.00021

주: 1) 각 행은 개인사업자 수를 가중치로 이용한 업종별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선형회귀분석 추정치를 제시함
2) 매출액 단위는 100만 원임

❑ 위의 추정식에 개인사업자별 매출액 정보를 결합하여 일반과세자의 개인사업별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할 수 있음

○ 홍범교 외 (2013)의 조사결과는 간이과세자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일반과세자들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결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 그러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미시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한계로 간주하고자 함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만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조사결과 및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음

○ 다만, 박명호 (2014)에서 일반과세 사업자들에 비해 신고 당 간이과세자자의 내부비용 및 외부비용이 1/2 수준이며, 간이과세자라는 정보를 이용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감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음

❑ 납세협력비용의 항목별 비중에 박명호 (2014)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에 대비한 간이과세자들의 납세협력 비용의 비율을 계산함

○ 박명호 (2014)의 방법에 더불어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6개월이며, 각 과세기간 당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연간 4회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들은 연간 1회만 신고한다는 사실을 이

용해 간이과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가중치를 생성함

○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연간 2기로 나뉘며, 매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나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 신고하는 것에 비추어 <표 15>의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은 일반과세자의 1/4로, 취득비용은 1/2로 가정하여 분석

<표 17> 업종별 · 유형별 납세협력비용 비중

(단위:%)

구 분	내부비용	외부비용	취득비용	합계	간이과세 사업자 적용비율
농·임·어·광업	60.4	30.6	9.0	100	27.3
제조업	47.0	47.3	5.7	100	26.4
건설업	59.9	33.5	6.7	100	26.7
도·소매업	47.4	42.3	10.3	100	27.6
음식·숙박업	72.7	19.2	8.0	100	27.0
부동산업	53.2	38.9	8.0	100	27.0
금융·보험업	74.0	18.6	7.4	100	26.9
운수·창고·통신업	66.4	24.4	9.3	100	27.4
서비스업	53.8	35.3	10.9	100	27.7
기타	52.1	35.3	12.7	100	28.2

주: 1) 합계는 내부비용, 외부비용, 취득비용 비율의 합임

2) 간이과세 사업자 적용비율은 (동일한 매출액 기준) 일반과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비한 간이과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비율로, 0.25*내부비용비율 + 0.25* 외부비용 비율 + 0.5*취득비용비율의 합으로 계산됨

자료: 홍범교 외 (2013) <표 III-6> (p.34)를 재구성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 비용 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행연구가 부족함을 감안하여 신고 간소화 및 기장 의무 면제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감소 효과에 대해 다른 2가지 상황을 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가정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연간 2기로 나뉘며, 매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나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 신고하는 것에 비추어 <표 13>의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은 일반과세자의 1/4로, 취득비용은 1/2로 가정하여 분석함.

○ 가정 2: 가정 1과 더불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의무가 적으므로 내부비용을 1/8로, 외부비용과 취득비용을 1/4로 가정하여 분석

○ 가정 3: 가정 2와 더불어 간이과세자는 기장의무가 적으므로 내부비용을 1/10으로, 외부비용을 1/4로, 취득비용은 없다고 가정하여 분석

❑ 요약하면, 납세협력비용 Γ_H와 Γ_L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일반과세의 납세협력비용 (Γ_H)

$$\Gamma_H = \hat{\alpha} + \hat{\beta} \cdot \text{매출액}$$, 여기서 $\hat{\alpha}$와 $\hat{\beta}$은 위의 표에 제시된 추정치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Γ_L)

$$\Gamma_L = \Gamma_H \times \text{c}$$, 여기서 c는 0과 1에 위치한 상수

(3) 부가가치세 징세행정비용

❑ 부가가치세 징세행정비용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음

❑ 다만, 김승래 외 (2007)는 Keen and Mintz (2004)의 최적 납부면제점 결정식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결산, 부가세 세수 비중, 사업자 수 정보로부터 도출된 평균값을 징세행정비용을 간주함

○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을 총 비용으로 간주하고, 이 중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응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같다고 가정하여 부가가치세 총 징세비용을 구한 후, 이를 전체 사업자 수로 나누어 평균 비용을 구하여, 사업자 단위 당 징세행정비용으로 사용함

❑ 본 연구에서는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제시된 2018년 기준 통계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시하고자 함

○ 전체 세수 약 283.5조 원 중 부가가치세수 약 70.0조원 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4.7%

○ 부가가치세수 비중을 전체 징세비용 약 1.6조 원 중에 곱하여 부가가치세 징세 비용이 약 0.4조 원이라고 추정

○ 부가가치세 납세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의 비중은 각각 25.8%와 0.3%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 기여도를 이용해, 일반과세 사업자에 대한 전체 징세행정비용이 약 1,050억 원,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한 전체 징세 비용이 약 10억 원이라고 추정함

○ 각 사업자 유형별 징세비용을 사업자 수로 나누어 유형별로 사업자 단위 평균 징세행정비용을 도출하면,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약 2만 6천 원,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1천 원이

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음

<표 18> 사업자 유형별 사업자 1인당 징세행정비용 추계

(단위: 만 원)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징세행정비용	0.072	2.568

(4) 간이과세자 선택확률

❑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점 z_H 보다 큰 경우에는 제도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자 선택확률이 결정됨

$$p_i(1|z_L,z_H)=0 \text{ and } p_i(2|z_L,z_H)=1 \text{ if } Y \geq z_H$$

❑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점 z_H 보다 작은 경우에는 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중 매출 구조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유리한 상태를 선택하게 됨

❑ 특정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상적 상황에서 실제 간이과세자 선택 여부는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가정 이용

○ 현재 제도 아래서 관측된 간이과세자에 대한 각 사업자의 선택은 간이과세 기준점이 상향되어도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됨

○ 간이과세 기준점이 낮춰져 새롭게 간이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확률은 현재 관측된 간이과세자 선택 비율을 따름

❑ 이 가정들 아래서 $Y < z_H$일 경우 간이과세자 확률을 아래와 같음

○ 편의를 위해 아래 정의를 사용함

- z_H^0 : 현재 간이과세기준점
- s_i^0 : 사업자 i의 현재 제도 아래서의 사업자 선택
- $1(\cdot)$: 조건을 만족하면 1의 값을 갖고, 만족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
- $\bar{p}$: 현재 제도 아래서 간이과세 미만 매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율

○ 경우 1 (간이과세 기준점이 현재 수준보다 상향, $z_H \geq z_H^0$)

$$p_i(1|z_L, z_H) = 1(s_i^0 = 1) \text{ and } p_i(2|z_L, z_H) = 1(s_i^0 = 2) \text{ if } Y < z_H$$

○ 경우 2 (간이과세 기준점이 현재 수준보다 하향, $z_H < z_H^0$)

$$p_i(1|z_L, z_H) = \bar{p} \text{ and } p_i(2|z_L, z_H) = 1 - \bar{p} \text{ if } Y < z_H$$

○ 현재 제도 아래서 관측된 평균 간이과세자 비율 $\bar{p}$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적용할 수도 있음

V.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적정 기준금액 추계 방안

1. 분석자료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2016년~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모형의 적용 가능성 및 분석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함

- ○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신고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이용
- ○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됨
- ○ 따라서 납부면제 및 간이과세의 적정 기준점을 찾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임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는 납부면제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 일반과세자의 경우 별도의 자료가 구축되어있지만, 납부면제자와 간이과세자는 구분이 불가능함
- ○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이 납부면제점 이하인 경우 납부면제자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므로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연단위로 합산하였음

❑ 모형의 분석을 위해 시범적으로 2016년~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를 검토하였음

- ○ 매출액, 매출세액, 매입액, 매입세액, 면세분 매출액, 의제매입세액, 납부세액, 업종, 업태, 지역 등의 변수 이용
- ○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형태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차감하여야 납부세액이 산출됨
- ○ 자료상 납부면제자는 간이과세자와 함께 분류되는데,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매출액이 납부면제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을 0으로 간주하였음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표본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분석 목

표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 가운데서 10%를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음

○ 분석 목표에 맞추어 표본을 층화추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가중치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역, 업종 등에 따라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지역 · 업종 · 과세유형 등 다양한 기준을 두어 표본을 추출하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할 수 있음

○ 만일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점이 변화할 때 사업자들이 한계적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점 근방의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추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분석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신규사업자, 주로 수출 등과 관련한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등 다양한 대상을 검토해 해당 사업자들을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등의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2. 기초통계분석

❑ <표 15>는 분석에 이용한 자료의 기초통계를 요약하고 있음

○ 부가가치율은 국세청에서 산출하는 산식인 (매출액-매입액)/(매출액)으로 정의하였음

○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5천만원 수준이며, 매입액은 9천만원

- 일반과세는 2억 1천만원, 간이과세는 5천만원~6천만원, 납부면제는 1천만원 내외로 나타남
-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임에도 평균 매출액이 기준점을 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 ①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였으나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점을 넘은 경우, ② 해당 기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 ③ 해당 기에 상당한 매출증가가 일어난 경우
- 해당 사업자는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점을 넘은 당해연도에는 간이과세자이지만, 다음연도에는 일반과세자로 편입됨

○ 평균 부가가치율은 -100% 이상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전기 · 가스 · 수도의 부가가치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으로 보임
-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90%를 넘는데, 이는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액을 전부 보고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평균 납부세액은 450만원 내외

-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600만원 내외이고, 간이과세자는 70만원~80만원선인데, 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액 차이와 더불어 세율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임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율인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약 2%로 낮아짐

❑ <부표 2>~<부표 16>에 업종별 기초통계를 수록하였음

○ 대체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낮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높음

-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입액을 정확하게 보고할 유인이 적어 부가가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광업과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어 모두 일반과세자로 분류됨

○ 전기·가스·수도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허용되는 업종이나 제공받은 자료에는 간이과세자가 없었음

- 이로 미루어 보아 전기 · 가스 · 수도 관련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음

<표 19> 부가가치세 납세자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152.10	211.80	49.42	10.65	154.80	212.20	49.96	10.80	155.10	207.30	58.96	12.68
(백만원)	(428.10)	(505.00)	(48.87)	(6.61)	(430.50)	(503.80)	(48.30)	(6.63)	(425.50)	(492.00)	(56.12)	(8.09)
매입액	90.36	130.70	6.50	0.27	91.48	130.10	5.36	0.27	90.68	125.70	6.21	0.36
(백만원)	(326.50)	(384.30)	(138.90)	(1.53)	(321.60)	(378.10)	(14.75)	(1.66)	(319.70)	(371.50)	(15.55)	(1.47)
부가가치율	-1.132	-2.083	0.909	0.971	-1.573	-2.662	0.919	0.968	-1.378	-2.292	0.918	0.959
납부세액	424.10	608.30	75.11	0.00	443.10	624.80	76.71	0.00	450.60	620.40	87.90	0.00
(만원)	(1,494.00)	(1,772.00)	(65.67)	0.00	(1,525.00)	(1,794.00)	(65.00)	0.00	(1,527.00)	(1,774.00)	(76.28)	0.00
관측치 수	482,202	331,209	40,592	110,401	496,943	347,384	41,537	108,022	504,120	361,976	29,463	112,681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 <표 16>은 분석에 이용한 자료 중 과세유형에 따른 표본 수를 요약한 것임

〈표 20〉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체	전체	482,202	496,943	504,120	광업	전체	21	17	18
	일반	331,209	347,384	361,976	제조	전체	35,332	35,461	35,743
	간이	40,592	41,537	29,463		일반	33,164	33,284	33,778
	납부면제	110,401	108,022	112,681		간이	334	369	268
농·림·어업, 수렵	전체	112	146	166		납부면제	1,834	1,808	1,697
	일반	74	93	117	전기, 가스, 수도	전체	1,462	1,994	2,673
	간이	3	17	10	도매	전체	36,862	37,160	37,601
	납부면제	35	36	39		일반	36,695	37,096	37,558
숙박	전체	4,204	4,401	4,402		간이	40	16	12
	일반	1,987	2,242	2,260		납부면제	127	48	31
	간이	467	563	357	소매	전체	66,271	67,339	66,315
	납부면제	1,750	1,596	1,785		일반	39,107	40,483	40,984
운수, 창고, 통신	전체	49,985	49,985	49,985		간이	8,898	8,553	5,604
	일반	30,262	30,262	30,262		납부면제	18,266	18,303	19,727
	간이	3,271	3,271	3,271	부동산 매매	전체	256	310	300
	납부면제	16,452	16,452	16,452	건설	전체	29,116	30,816	32,168
부동산 임대	전체	104,865	109,424	112,001		일반	29,004	30,698	32,055
	일반	65,366	69,721	74,312		간이	18	16	11
	간이	4,348	4,593	2,730		납부면제	94	102	102
	납부면제	35,151	35,110	34,959	음식	전체	76,776	77,991	77,774
대리, 중계, 주선	전체	21,814	23,024	24,340		일반	45,809	48,490	50,515
	일반	14,411	15,674	17,055		간이	15,215	15,029	11,767
	간이	2,555	2,582	1,720		납부면제	15,752	14,472	15,492
	납부면제	4,848	4,768	5,565	기타	전체	119	91	99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전체	55,007	57,926	59,410		일반	76	70	
	일반	33,528	35,948	37,982		간이	10	4	
	간이	5,432	5,687	3,831		납부면제	33	17	
	납부면제	16,047	16,291	17,597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 순 사회후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할 확률 추정 필요

○ 그런데 간이과세 기준점과 납부면제 기준점이 달라짐에 따라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

는 사업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는 현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음

- ○ 이를 대략적으로 추측해보기 위해 일반과세자 중에서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을 충족하지만 일반과세를 선택한 비율과 납부면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일반과세를 충족한 비율을 제시하였음
- ○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업종별로 간이과세 세율도 달라 간이과세 포기에 따른 편익도 달라질 수 있어 업종별로 비율을 제시하였음

❑ <표 17>은 매출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점을 만족하나 일반과세를 선택한 사업자의 비율을 요약한 것임

- ○ 전체 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점을 만족하나 일반과세를 선택한 사업자의 비율임
- ○ 평균적으로 12% 정도의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30%의 사업자가 납부면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하지만 업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매출액이 납부면제점을 만족하나 일반과세자로 편입된 비율이 60% 이상에 육박함
- ○ <표 17>의 결과는 매출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점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할 비율을 업종별로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21>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편입된 비율

	2016		2017		2018	
	간이과세	납부면제	간이과세	납부면제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12.7%	28.7%	12.5%	29.5%	9.1%	33.1%
농림어업, 수렵업	7.6%	42.9%	6.9%	41.2%	3.7%	43.3%
숙박업	12.6%	23.7%	11.1%	22.9%	8.7%	26.1%
운수, 창고, 통신	18.5%	16.5%	18.0%	15.9%	13.2%	19.4%
부동산 임대업	15.7%	63.8%	15.8%	64.1%	10.9%	68.6%
대리, 중계 주선	19.8%	23.6%	18.7%	24.7%	14.8%	29.3%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3.8%	29.5%	13.8%	30.8%	10.1%	35.2%
제조업	7.9%	13.0%	8.1%	12.7%	5.8%	15.0%
도매업	7.7%	16.2%	7.6%	16.0%	5.5%	18.0%
소매업	10.5%	19.2%	10.3%	19.1%	7.7%	22.0%
건설업	10.3%	17.1%	9.6%	16.5%	7.8%	18.9%
음식업	11.1%	9.6%	10.5%	9.5%	7.7%	11.1%
기타	12.8%	54.7%	12.8%	47.9%	15.5%	44.2%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 <표 18>은 산업별, 과세유형별로 음의 부가가치를 보이는 사업자의 비율을 요약한 것임

○ 부가가치율은 국세청에서 산출하는 산식인 (매출액-매입액)/(매출액)으로 정의하였음

○ 음의 부가가치를 보이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기준점 및 납부면제 기준점이 달라지더라도 일반과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 조세수입을 감소시킴

○ 각 업종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를 수 있어 업종별로 비율을 구하였음

○ 평균적으로 약 6%의 사업자가 음의 부가가치율을 보임

- 일반과세자의 경우 농 · 림 · 어업 및 수렵업, 전기, 가스, 수도, 도매업에서 음의 부가가치율을 보이는 사업자의 비율이 높았음
- 부동산 임대업은 음의 부가가치율을 보이는 사업자가 확연히 낮음

○ 간이과세자 중에서 음의 부가가치율을 보이는 사업자의 비율이 현격히 낮음

- 이는 간이과세자들은 자신의 매출세액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져서 매입액을 전부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표 22>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중 음의 부가가치율을 보이는 사업자의 비율

	2016		2017		2018	
	일반과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간이과세
전체	5.62%	0.17%	5.60%	0.17%	5.77%	0.18%
농·림·어업, 수렵업	10.60%	1.79%	7.65%	0.00%	8.51%	0.00%
숙박업	5.87%	0.21%	5.87%	0.04%	5.79%	0.21%
운수, 창고, 통신	5.45%	0.00%	6.03%	0.01%	5.98%	0.02%
부동산 임대업	2.21%	0.03%	2.33%	0.01%	2.32%	0.03%
대리, 중계 주선	3.92%	0.14%	4.09%	0.10%	5.00%	0.17%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6.40%	0.15%	6.81%	0.17%	7.14%	0.13%
광업	3.57%	-	9.09%	-	4.00%	-
제조업	7.03%	0.46%	6.93%	0.62%	7.05%	0.36%
전기, 가스, 수도	11.10%	-	8.88%	-	10.40%	-
도매업	10.20%	1.37%	9.40%	0.85%	10.20%	0.00%
소매업	7.49%	0.38%	7.38%	0.39%	7.86%	0.44%
부동산 매매업	8.02%	-	8.23%	-	7.04%	-
건설업	8.49%	0.00%	8.31%	0.45%	7.68%	0.00%
음식업	5.17%	0.26%	4.92%	0.23%	4.80%	0.27%
기타	4.95%	-	7.35%	-	7.89%	-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 <표 17>과 <표 18>의 결과를 통해 사업자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반과세자 중 음의 부가가치율을 보이는 사업자의 비율과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한 사업자의 비율이 유사함

○ 음의 부가가치율을 보이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임

3. 자료 분석 방법

❑ 제Ⅳ장 2절에서 소개한 분석방법론을 기반으로 사회후생 측정

○ 사회후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선택확률, 사회적 가치(δ), 납세협력비용, 징세행정

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사회적 가치, 납세협력비용, 징세행정비용은 제Ⅳ장 2절을 따라 설정함

○ 간이과세 선택확률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추정을 진행할 수 있음

❑ 간이과세 선택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로짓분석 진행

○ 매출액이 간이과세기준을 충족하지만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은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세액이 더 큰 경우 일반과세를, 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간이과세를 선택할 것임

○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면 환급세액과 납부세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간이과세 선택확률로 달라짐

○ 이를 고려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로 간이과세 선택확률 추정

- 간이과세자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인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이항선택 모형 중 하나인 로짓분석 진행
- 간이과세여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립변수로 매출액과 지역더미를 이용하였음
-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간이과세 선택확률 산출

❑ <표 19는> 산업별 간이과세 선택확률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간이과세 선택확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부표 17>에 수록하였음

- 분석결과,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간이과세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임

○ 어떤 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점을 만족할 때 간이과세를 선택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5%로 나타남

- 업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음식점업이 약 15%로 가장 높았음
- <표 15>에서 간이과세와 납부면제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한 사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던 것과 일맥상통함

○ <부표 19>의 추정식을 이용하여 사업자별 간이과세를 선택할 확률을 산출한 뒤, 각 사업자의 순 사회후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확률을 이용하였음

<표 23> 로짓 분석결과를 이용해 추정한 간이과세 확률

(단위: %)

	간이과세 확률
전체	5.23
농림어업, 수렵업	4.26
숙박업	7.54
운수, 창고, 통신	6.03
부동산 임대업	1.97
대리, 중계 주선	6.42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5.73
제조업	0.71
도매업	0.03
소매업	7.54
건설업	0.03
음식업	14.79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 최적 간이과세 기준점과 납부면제 기준점을 도출하기 위해 그리드 서치(grid search)를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각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의 사업자가 산출하는 순 사회후생을 계산하여 모두 합한 뒤 이를 극대화하는 간이과세 기준점과 납부면제 기준점 도출

○ 간이과세 기준점을 임의로 선정한 뒤, 납부면제 기준점을 찾아 나가는 방식을 이용하였음

○ 예를 들어, 간이과세 기준점을 8,000만원으로 설정한 뒤 최적 납부면제점을 찾기 위해 납부면제점을 0원~8,000만원으로 변경하면서 사회후생이 가장 큰 점을 찾을 수 있음

○ 동일한 방식으로 간이과세 기준점에 변화를 주면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간이과세 기준점과 납부면제 기준점 도출

❑ 모형에서 제시된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

○ 부가가치율, 사회적 가치, 납세협력비용 및 납부면제자 비용부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음

○ 부가가치율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라 산출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실제보다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동일업종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율과 신고서 상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사이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음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활용해 납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매입액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가가치율이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경우, 제Ⅳ장의 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가가치율이 높을수록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이 많아지므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게 되어 최적 경계점이 낮아질 수 있음
- 그러므로 실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동일업종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율과 신고서 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사이에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일정 구간을 두어 부가가치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분석 진행 가능

○ 사회적 가치는 김승래 외 (2007)이 제시한 $\delta = 1.115$와 Keen and Mintz (2004)가 제시한 $\delta = 1.3$ 두 가지 값을 이용할 수 있음

○ 제Ⅳ장의 모형에서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으므로 순 사회후생이 0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는 납부면제자라고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다는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납부면제자의 순 사회후생이 0인 경우와 간이과세자와 같은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할 수 있음

○ 또한 제Ⅳ장의 모형은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점과 납부면제 기준점 이하인 경우 선택의 여지 없이 간이과세자나 납부면제자가 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를 포기할 수 있음

- 이를 반영하기 위해 모형과 같이 과세유형을 강제하는 경우와 확률을 부여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장부기장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부담이 적고, 신고 횟수도 적은 등 납세협력비용이 적어 이에 대해 세 가지 가정을 두고 분석 가능하며 이는 제Ⅳ장의 '주요 모수의 설정 방법'에서 소개하였음

❑ 모형에 포함된 파라미터와 부가가치율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

하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최적 경계점을 결정하는 여러 파라미터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음

○ 부가가치율 함수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신고 자료를 이용할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함

VI. 결론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에 맞춰 최근 행정당국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점 및 간이과세 기준점을 현행 간이과세 4,800만원 납부면제 3,000만원에서 간이과세 8,000만원, 납부면제 4,8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 본 연구는 Keen and Mintz (2004)의 모형을 확장하여 납부의무 면제점 및 간이과세 기준점 설정과 관련한 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자 함

❑ 송헌재·전병힐 (2020)의 연구에서 도출한 부가가치세 최적 경계점은 아래와 같음

$$z_j^* = \frac{\delta(A_{j+1} - A_j) + (\Gamma_{j+1} - \Gamma_j)}{(\delta - 1)(\tau_{j+1} - \tau_j)\nu(z_j^*)}$$

- ○ 최적 경계점 z_j^*는 납세협력비용(A_j), 징세행정비용(Γ_j), 사회적 가치(δ), 그리고 세율(τ_j)과 부가가치율 함수($\nu(z_j^*)$)의 형태에 의해 결정됨
- ○ 과세유형이 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과 징세행정비용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 최적 경계점은 높아짐
- ○ 만일 납부면제점 변화에 대한 부가가치율 변화의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의 증가가 최적 경계점을 인상하고, 그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최적 경계점이 낮아짐
- ○ 그러나 부가가치율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파라미터 변화가 최적 경계점을 낮추는 구간과 높이는 구간이 구분되어 나타날 수 있음

❑ 납세협력비용의 감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에 대해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과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게 됨을 뜻하고, 이에 따라 최적 납부면제 기준점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게 됨을 뜻함

- ○ 가정 1에서 가정 2, 가정 3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납부면제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 간의 비용 구조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 폭이 줄어들고, 이 경우 납부면제금액이 낮아지게 됨
- ○ 만일 여러 가정을 도입하여 다양한 정도의 납세협력비용 감소를 고려하게 되면 최적 경계점이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납세협력비용의 감소가 간이과세기준에 미치는 효과는 모형에서 사전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음

- ○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사업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납세협력비용 감소 항목과 간이과세 사업자들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납세협력비용 감소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간이과세자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요인들의 납세협력비용 감소 효과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옴
- ○ 가정 1에서 가정 3으로 순차적으로 납세협력비용 구조가 변하는 상황이 동일한 방향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이 경우 최적 간이과세기준점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남
- ○ 반면에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납세협력비용 감소는 현재 분석모형 아래서는 간이과세 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이 경우 최적 간이과세기준점이 오히려 하락하게 됨
- ○ 종합할 때, 두 요인들의 효과의 상대적인 폭에 따라 최적 간이과세 기준점의 증가, 감소 여부가 결정됨

❑ 간이과세자가 매입액을 전부 보고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율에 왜곡이 일어나 사회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분석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

- ○ 따라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할 때 납세협력비용과 징세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율이 나타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최근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점 및 간이과세 기준점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 과세당국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일련의 시도들을 통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현저하게 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 그러나 납세협력비용 감소를 고려할 때 납부면제점은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함
- ○ 간이과세 기준점의 경우 최근 보고된 납세협력비용 감소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 간의 차이에 미친 효과를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는 최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점 설정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간이과세제도를 함께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최적 기준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선행연구의 모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러 가정을 도입한 것이므로, 보다 엄밀한 결과를 위해서는 납세협력비용을 포함한 관련 모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

- ○ 사회후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징세행정비용, 납세협력비용에 상당한 가정을 도입하였고, 그 가정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음
- ○ 사회적 가치와 납세협력비용의 변화에 따라 간이과세 기준점 및 납부면제 기준점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 ○ 따라서 엄밀한 분석을 통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음

VII. 참 고 문 헌

국세청 (2019), 『2018 국세통계연보』.

김승래·박명호·홍범교 (2007),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2014), 『주요 과제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 측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정우. (2015). 「간이과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연구: 독일,일본,중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pp. 239-266.

송헌재·전병힐 (2020), "부가가치세 최적 면세점 및 간이과세 기준 분석 모형: Keen & Mintz (2004)와 Zee (2005) 모형 확장", Working Paper.

심충진·김진태. (202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7권 제1호, pp. 37-61.

이하진·권기정. (2016).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와 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pp. 91-121.

정유석. (2018).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무역연구』, 제14권 제5호, pp. 505-524.

홍범교·박명호·이혜원·고윤성 (2013), 『개인사업자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rashares, E., M. Knittel, G. Silverstein, and A. Yuskavage (2014). "Calculating the Optimal Small Business Exemption Threshold for a U.S. VAT," National Tax Journal, Vol. 67. No. 2, pp. 283-320

Keen, M. and J. Mintz (2004). "The Optimal Threshold for a Value-Added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8, pp. 559-576

부록

<부표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구분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재화의 수입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

<부표 2> 농 · 림 · 어업 및 수렵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105.30	151.50	39.67	13.11	97.09	139.20	47.11	11.98	137.30	187.40	36.72	12.62
(백만원)	(170.30)	(194.00)	(6.97)	(7.26)	(159.70)	(187.00)	(28.61)	(8.04)	(321.30)	(371.70)	(7.33)	(9.11)
매입액	28.29	42.75	0.66	0.08	68.65	107.60	0.53	0.08	65.21	92.47	0.12	0.13
(백만원)	(57.66)	(66.55)	(0.94)	(0.31)	(471.00)	(587.70)	(0.82)	(0.20)	(228.60)	(267.90)	(0.26)	(0.25)
부가가치율	0.428	0.195	0.985	0.872	-0.951	-2.053	0.989	0.982	-8.168	-12.00	0.997	0.990
납부세액	630.40	951.00	77.67	0.00	537.30	828.00	84.76	0.00	633.30	892.10	76.10	0.00
(만원)	(1,280.00)	(1,478.00)	(13.65)	0.00	(1,206.00)	(1,434.00)	(37.54)	0.00	(1,429.00)	(1,636.00)	(26.15)	0.00
관측치 수	112	74	3	35	146	93	17	36	166	117	10	39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3> 숙박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82.89	156.30	40.74	10.81	98.12	175.10	39.69	10.54	97.43	172.60	48.08	12.08
(백만원)	(165.80)	(218.30)	(20.35)	(6.90)	(200.60)	(258.10)	(20.08)	(6.89)	(194.00)	(247.60)	(32.61)	(8.17)
매입액	46.73	98.36	1.32	0.23	50.60	98.82	1.29	0.25	48.62	94.22	1.56	0.30
(백만원)	(199.40)	(281.20)	(1.44)	(0.56)	(172.40)	(231.50)	(1.70)	(0.73)	(144.00)	(190.00)	(1.92)	(0.61)
부가가치율	-1.164	-3.549	0.967	0.976	0.0511	-0.837	0.967	0.975	-1.150	-3.161	0.968	0.971
납부세액	215.90	437.90	80.14	0.00	319.30	606.80	79.28	0.00	330.20	628.30	93.67	0.00
(만원)	(2,000.00)	(2,893.00)	(40.23)	0.00	(1,957.00)	(2,710.00)	(46.08)	0.00	(1,613.00)	(2,211.00)	(63.99)	0.00
관측치 수	4,204	1,987	467	1,750	4,401	2,242	563	1,596	4,402	2,260	357	1,785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4> 운수, 창고, 통신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58.53	86.69	31.59	12.09	60.98	88.74	32.51	12.37	64.09	90.59	37.48	14.78
(백만원)	(106.50)	(129.20)	(6.33)	(5.43)	(102.80)	(122.90)	(6.75)	(5.63)	(101.40)	(119.50)	(6.02)	(7.37)
매입액	25.92	42.72	0.85	0.01	28.25	45.80	0.89	0.02	29.17	46.05	0.97	0.03
(백만원)	(63.56)	(77.19)	(0.98)	(0.11)	(75.81)	(92.42)	(0.74)	(0.24)	(67.46)	(80.18)	(0.97)	(0.28)
부가가치율	0.443	0.0834	0.973	0.999	0.454	0.118	0.973	0.997	0.449	0.132	0.974	0.997
납부세액	219.90	356.40	62.00	0.00	219.90	349.10	63.82	0.00	234.30	363.50	73.60	0.00
(만원)	(452.90)	(539.50)	(12.59)	0.00	(463.50)	(552.60)	(13.38)	0.00	(519.00)	(616.80)	(12.33)	0.00
관측치 수	49,985	30,262	3,271	16,452	50,843	31,278	4,107	15,458	51,110	32,298	3,151	15,661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5> 부동산 임대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36.89	51.95	33.68	9.28	38.32	53.01	33.64	9.77	39.00	52.14	38.93	11.08
(백만원)	(103.20)	(128.20)	(11.46)	(6.42)	(116.30)	(143.40)	(13.37)	(6.36)	(106.00)	(127.90)	(19.59)	(7.40)
매입액	10.21	16.38	0.05	0.01	11.04	17.32	0.05	0.01	10.09	15.20	0.06	0.01
(백만원)	(94.81)	(119.70)	(0.45)	(0.20)	(112.30)	(140.20)	(0.62)	(0.34)	(92.20)	(112.90)	(0.42)	(0.42)
부가가치율	-5.518	-9.455	0.999	0.998	-7.015	-11.58	0.999	0.998	-4.696	-7.584	0.999	0.998
납부세액	196.30	308.40	97.85	0.00	201.10	309.20	98.46	0.00	216.30	321.80	113.30	0.00
(만원)	(1,179.00)	(1,482.00)	(33.19)	0.00	(1,324.00)	(1,648.00)	(59.16)	0.00	(1,166.00)	(1,419.00)	(57.04)	0.00
관측치 수	104,865	65,366	4,348	35,151	109,424	69,721	4,593	35,110	112,001	74,312	2,730	34,959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6> 대리, 중계, 주선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99.95	139.90	42.49	11.41	98.47	134.00	43.96	11.13	95.51	127.00	51.55	12.61
(백만원)	(344.30)	(417.70)	(23.57)	(7.02)	(289.90)	(345.30)	(27.17)	(6.98)	(282.90)	(332.60)	(36.49)	(8.32)
매입액	31.01	46.80	0.55	0.14	32.13	47.03	0.71	0.16	33.66	47.89	0.79	0.20
(백만원)	(154.40)	(188.00)	(1.14)	(0.73)	(154.60)	(185.50)	(5.71)	(0.58)	(182.00)	(215.90)	(1.03)	(0.59)
부가가치율	0.609	0.417	0.987	0.982	0.643	0.484	0.985	0.979	0.511	0.314	0.984	0.969
납부세액	499.90	735.00	123.10	0.00	487.20	694.70	127.30	0.00	463.20	646.00	149.10	0.00
(만원)	(1,868.00)	(2,263.00)	(68.18)	0.00	(1,537.00)	(1,826.00)	(77.05)	0.00	(1,473.00)	(1,728.00)	(100.40)	0.00
관측치 수	21,814	14,411	2,555	4,848	23,024	15,674	2,582	4,768	24,340	17,055	1,720	5,565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7>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93.37	141.00	41.81	11.22	94.39	140.40	41.11	11.37	95.43	138.30	48.01	13.26
(백만원)	(238.60)	(295.60)	(28.78)	(6.60)	(256.40)	(316.40)	(25.41)	(6.65)	(235.80)	(285.70)	(36.75)	(8.02)
매입액	37.36	60.97	1.50	0.17	37.58	60.23	1.50	0.20	38.69	60.22	1.81	0.26
(백만원)	(135.50)	(169.40)	(1.84)	(0.62)	(121.00)	(149.10)	(1.74)	(0.75)	(136.90)	(167.50)	(2.79)	(0.74)
부가가치율	-0.265	-1.059	0.964	0.979	-1.146	-2.439	0.963	0.970	-0.367	-1.110	0.962	0.947
납부세액	411.10	654.80	121.40	0.00	421.30	660.00	119.20	0.00	417.70	639.40	138.70	0.00
(만원)	(1,319.00)	(1,642.00)	(87.27)	0.00	(1,487.00)	(1,847.00)	(73.53)	0.00	(1,480.00)	(1,813.00)	(100.10)	0.00
관측치 수	55,007	33,528	5,432	16,047	57,926	35,948	5,687	16,291	59,410	37,982	3,831	17,597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8> 광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전체	전체
매출액	415.00	336.40	825.10
(백만원)	(605.50)	(490.90)	(876.30)
매입액	190.10	188.20	325.40
(백만원)	(320.80)	(331.30)	(421.80)
부가가치율	0.520	-0.0223	0.580
납부세액	1,775.00	1,176.00	4,251.00
(만원)	(2,734.00)	(1,665.00)	(4,549.00)
관측치 수	21	17	18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9> 제조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424.50	451.20	37.24	11.49	424.70	451.50	38.84	11.12	417.40	440.60	48.23	12.69
(백만원)	(867.00)	(888.30)	(14.22)	(6.91)	(869.60)	(891.00)	(27.18)	(6.90)	(845.30)	(863.80)	(40.17)	(8.07)
매입액	232.40	247.50	3.96	0.25	232.00	247.10	5.18	0.37	226.50	239.60	7.21	0.36
(백만원)	(588.80)	(604.70)	(8.35)	(1.53)	(587.70)	(603.60)	(12.78)	(3.15)	(565.30)	(578.90)	(12.10)	(1.59)
부가가치율	0.215	0.167	0.909	0.966	0.125	0.0733	0.883	0.918	-0.858	-0.962	0.850	0.935
납부세액	1,385.00	1,474.00	72.41	0.00	1,412.00	1,503.00	75.38	0.00	1,394.00	1,474.00	94.23	0.00
(만원)	(3,052.00)	(3,129.00)	(28.37)	0.00	(2,971.00)	(3,044.00)	(52.83)	0.00	(3,094.00)	(3,164.00)	(78.95)	0.00
관측치 수	35,332	33,164	334	1,834	35,461	33,284	369	1,808	35,743	33,778	268	1,697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10> 전기, 가스, 수도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전체	전체
매출액	38.27	29.04	30.04
(백만원)	(116.70)	(70.67)	(79.36)
매입액	35.63	40.82	56.62
(백만원)	(119.10)	(144.30)	(164.80)
부가가치율	-14.10	-12.25	-34.03
납부세액	(7.63)	(140.90)	(291.90)
(만원)	(1,493.00)	(1,412.00)	(1,568.00)
관측치 수	1,462	1,994	2,673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11> 도매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427.30	429.10	46.19	8.29	442.10	442.80	55.14	6.40	427.70	428.20	49.82	9.21
(백만원)	(713.30)	(714.40)	(26.65)	(6.34)	(748.60)	(749.00)	(68.53)	(6.09)	(714.10)	(714.40)	(16.68)	(7.14)
매입액	321.90	323.30	1.41	2.99	332.20	332.70	1.67	0.55	320.30	320.70	2.17	0.26
(백만원)	(567.80)	(568.70)	(2.00)	(29.56)	(601.80)	(602.20)	(1.40)	(1.96)	(577.10)	(577.30)	(2.40)	(0.54)
부가가치율	-0.0422	-0.0429	0.968	-0.167	-0.127	-0.129	0.955	0.870	-0.0433	-0.0444	0.956	0.953
납부세액	575.40	577.90	50.40	0.00	639.40	640.40	58.56	0.00	618.40	619.00	52.17	0.00
(만원)	(1,809.00)	(1,813.00)	(27.90)	0.00	(1,890.00)	(1,891.00)	(67.90)	0.00	(1,847.00)	(1,848.00)	(24.63)	0.00
관측치 수	36,862	36,695	40	127	37,160	37,096	16	48	37,601	37,558	12	31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12> 소매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185.60	298.60	48.17	10.50	192.00	304.30	49.78	10.29	197.00	304.80	59.05	12.14
(백만원)	(553.20)	(697.50)	(53.03)	(7.14)	(547.20)	(682.40)	(52.42)	(7.19)	(585.30)	(723.20)	(61.62)	(8.77)
매입액	140.90	237.30	5.23	0.41	144.40	239.60	1.96	0.42	148.20	239.20	2.23	0.48
(백만원)	(510.50)	(631.80)	(294.80)	(1.37)	(470.10)	(587.20)	(3.77)	(3.04)	(502.80)	(622.40)	(4.81)	(1.36)
부가가치율	0.233	-0.261	0.948	0.943	0.308	-0.112	0.960	0.933	0.193	-0.262	0.964	0.918
납부세액	197.60	323.90	48.06	0.00	218.60	353.10	49.35	0.00	227.30	359.80	58.79	0.00
(만원)	(887.40)	(1,138.00)	(53.10)	0.00	(904.30)	(1,146.00)	(51.87)	0.00	(851.30)	(1,061.00)	(63.14)	0.00
관측치 수	66,271	39,107	8,898	18,266	67,339	40,483	8,553	18,303	66,315	40,984	5,604	19,727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13> 부동산 매매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전체	전체
매출액	552.40	509.10	399.80
(백만원)	(1,353.00)	(1,312.00)	(1,008.00)
매입액	532.10	414.60	360.50
(백만원)	(1,340.00)	(1,306.00)	(1,299.00)
부가가치율	-48.48	-6.408	-4.574
납부세액	(301.80)	479.30	19.87
(만원)	(7,091.00)	(7,292.00)	(10,830.00)
관측치 수	256	310	300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14> 건설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186.50	187.20	54.04	11.33	193.30	194.00	38.73	9.08	191.50	192.10	41.04	11.48
(백만원)	(309.20)	(309.60)	(59.14)	(7.66)	(312.30)	(312.70)	(14.66)	(6.85)	(300.80)	(301.10)	(17.00)	(7.82)
매입액	88.72	89.06	1.39	0.12	90.01	90.36	1.64	0.10	87.97	88.28	2.04	0.16
(백만원)	(194.10)	(194.40)	(1.74)	(0.34)	(185.00)	(185.20)	(3.03)	(0.24)	(185.50)	(185.80)	(2.61)	(0.46)
부가가치율	0.246	0.243	0.968	0.987	0.189	0.186	0.955	0.947	-2.876	-2.890	0.960	0.985
납부세액	803.40	806.40	158.00	0.00	853.10	856.30	112.80	0.00	857.30	860.30	119.50	0.00
(만원)	(1,547.00)	(1,549.00)	(172.10)	0.00	(1,636.00)	(1,638.00)	(42.59)	0.00	(1,608.00)	(1,610.00)	(49.58)	0.00
관측치 수	29,116	29,004	18	94	30,816	30,698	16	102	32,168	32,055	11	102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15> 음식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매출액	132.60	197.40	62.88	11.47	139.30	200.40	64.86	11.52	149.80	208.90	74.60	14.31
(백만원)	(235.90)	(284.70)	(62.54)	(6.73)	(245.20)	(291.70)	(63.06)	(6.84)	(269.00)	(316.00)	(69.01)	(8.51)
매입액	79.27	128.10	13.32	1.08	81.79	127.30	12.56	1.06	85.98	128.80	13.28	1.49
(백만원)	(141.60)	(165.90)	(23.56)	(2.31)	(147.80)	(171.60)	(22.35)	(2.37)	(155.40)	(178.30)	(22.43)	(3.19)
부가가치율	0.272	-0.126	0.812	0.910	0.182	-0.235	0.826	0.912	0.367	0.0960	0.838	0.892
납부세액	414.70	674.20	62.48	0.00	451.10	705.60	64.27	0.00	4.918e+06	7.400e+06	739,266	0
(만원)	(1,106.00)	(1,371.00)	(62.82)	0.00	(1,116.00)	(1,352.00)	(62.52)	0.00	(1.240e+07)	(1.480e+07)	(683,790)	(0)
관측치 수	76,776	45,809	15,215	15,752	77,991	48,490	15,029	14,472	77,774	50,515	11,767	15,492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16> 기타 업종 기초통계

	2016				2017				2018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일반과세	간이과세	납부면제	전체
매출액	67.21	93.06	60.76	9.62	77.47	96.01	52.11	7.08	98.26
(백만원)	(156.10)	(188.70)	(66.83)	(7.39)	(238.30)	(269.10)	(32.01)	(6.48)	(225.10)
매입액	22.13	34.47	0.58	0.26	42.69	55.42	0.92	0.11	43.71
(백만원)	(83.21)	(102.30)	(0.60)	(0.52)	(196.70)	(223.00)	(1.82)	(0.24)	(175.30)
부가가치율	0.355	0.00315	0.985	0.973	0.472	0.318	0.989	0.989	0.442
납부세액	334.90	502.30	167.90	0.00	250.60	319.30	113.00	0.00	436.80
(만원)	(1,503.00)	(1,863.00)	(198.80)	0.00	(557.30)	(619.30)	(78.12)	0.00	(790.70)
관측치 수	119	76	10	33	91	70	4	17	99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

<부표 17> 업종별 간이과세확률 추정 결과

	농 · 림 · 어업, 수렵업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	부동산 임대업	대리, 중계, 주선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음식업
매출액 (억원)	-0.397	-0.302***	-0.734***	0.0518***	-0.228***	-0.244***	-1.010***	1.417	-0.947**	-0.276***	-0.109	-1.490**	-0.418***
	(0.517)	(0.0659)	(0.0522)	(0.0115)	(0.0315)	(0.0200)	(0.100)	(1.736)	(0.429)	(0.0125)	(0.641)	(0.667)	(0.0109)
상수항	-1.022	-2.206***	-1.134***	-4.155***	-2.263***	-3.012***	-3.912***	-5.798***	-5.266***	-2.441***	-4.657***	-6.782***	-1.425***
	(1.183)	(0.190)	(0.0314)	(0.0444)	(0.0504)	(0.0420)	(0.154)	(1.166)	(0.615)	(0.0350)	(1.026)	(1.036)	(0.0290)
관측치 수	88	4,729	50,062	138,805	26,776	66,828	37,564	249	17,237	74,293	114	17,680	79,543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10% 표본자료